과학기술정보통신부

보도자료

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 시점 배포 시점 배포 2026. 11. 27.(금) 09:00

인공지능 시대 연구개발 경쟁력의 핵심, ‘국가연구데이터’ 생태계 기반 마련

– 제 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, **국가연구데이터 정책 기본방향 심의 및 의결** –

– **내년 6월 연구데이터법 시행** 앞두고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의무화, 데이터 통합 이음터 구축 등 **데이터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관리방안 확립** –

【관련 국정과제】 26.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 11월 25일(수)~26일(목) 서면으로 개최된 **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**(이하 ‘과기장관회의’)에서 **「국가연구데이터 정책 기본방향(안)」을 의결**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안건은 **내년 6월 시행**을 앞둔 **「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**에 따라 **국가 차원의** 체계적인 **연구데이터 생태계를 조성**하고 법 시행 시 예상되는 **연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**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그동안 연구데이터는 최종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**중간산출물 정도로 여겨져,**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되어 생산된 귀중한 데이터들이 **연구자 개인의 컴퓨터나 외장 매체**에 **파편적으로 저장**되다 결국 **사장되는 경우가 빈번**했다.

그러나 **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**되면서 **고품질의 연구데이터**는 **국가 연구개발 경쟁력을 결정**짓는 **핵심자산으로 부상**했다.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는 단순히 과거의 연구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, **후속연구의 소요 시간**을 **획기적으로 단축**하고, 학제간 **융합 연구를 촉진**하며, 나아가 **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모델** 학습을 위한 **핵심 기반을 제공**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의의를 지닌다.

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**데이터 생산·수집단계**부터 **데이터 등록·관리단계**를 거쳐 **데이터 개방·활용단계**까지 이어지는 연구데이터의 **생애주기에 맞춘 단계별 관리방안**을 제시하였다.

[데이터 생산 및 수집 단계]

앞으로 **과제 신청 및 협약단계**부터 **데이터관리계획 수립과 제출이 의무화**된다. **연구자**는 연구결과의 검증과 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'**데이터셋' 단위**로 묶어 **최종평가 전까지 등록**해야한다. 데이터셋은 실제 결과물인 **본데이터**와 이를 설명하는 **메타데이터**, 그리고 해석에 필수적인 **부속데이터**로 구성된다.

의무등록 범위는 과제의 **최종보고서**에 표기된 **연구결과를 검증**할 수 있는 **데이터**와 **국가가 지정한 대형장비**에서 도출된 데이터로 **한정**하였다. 이는 연구수행 전과정의 모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**행정부담을 덜고**, 연구자의 **연구 몰입도를 높이기** 위한 조치이다. 다만, 혁신성을 인정받은 **'의미있는 도전과제'와 그 후속과제**의 경우, 실패의 경험도 자산화하기 위해 **중간과정에서 도출된 데이터**까지 **등록할 의무가 부여**된다.

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과제 기획 및 공고시 **데이터관리계획 필수 여부를 명시**하고, **최종평가시** 제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**이행 여부를 점검한다.**

[데이터 등록 및 관리 단계]

연구 과정에서 산출된 **데이터들이 유기적으로 연계**될 수 있도록 **다층적 통합 인프라를 구축**하여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**통합 검색되고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**한다. 연구자는 과제 특성과 공고문을 참고하여 기관자체 저장소, 분야별 전문센터, 국가 통합플랫폼 중 **적합한 곳을 선택**하여 **데이터를 등록**할 수 있다.

이를 뒷받침할 **국가연구데이터센터**는 **전문인력, 시설, 보안능력,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**하여 **지정**하고, **분야별 전문센터**는 해당 **연구분야의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진단 역량을 고려**하여 **2027년 상반기에 공모**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.

[데이터 개방 및 활용 단계]

등록된 연구데이터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실질적인 **인센티브 체계**를 마련하여 **고품질 데이터의 자발적인 공유를 유도**한다. 국가안보나 영업비밀

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공개를 허용하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출처를 표기하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**국제 표준 라이선스 적용을 권장**하여 **데이터의 개방성**을 높일 예정이다.

데이터를 성실하게 등록하고 공유한 **연구자와 연구기관**에는 데이터 활용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**평가시 가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**한다. 또한 **데이터셋에도 고유식별자를 부여**하여 데이터 활용시 **명시하도록 의무화**하는 제도를 통해 논문 인용과 마찬가지로 **원 생산자의 기여도를 인정**하고 무단 활용을 방지한다.

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소급효 금지원칙에 따라 **2027년 6월 이후 신규로 착수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본격 적용**된다. 단, 연구자가 희망할 경우 이미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의 데이터도 등록하여 연계할 수 있다.

과기정통부는 “전 국민이 체감하는 **인공지능 혁신 시대**에 **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데이터**는 **국가의 핵심 자산**”이라며, “이번 안건을 통해 연구현장에서 **연구데이터가 행정부담이 아닌 새로운 가치 창출의 도구로 인식**되도록 **지원을 아끼지 않겠다**”고 밝혔다

담당 부서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	책임자	과장	심혜영 (044-202-6920)
		담당자	사무관	김희선 (044-202-6925)

대체불가 대한민국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삶을 채우는 디지털·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OPEN 인공지능 학습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